

##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지원기간 등 안내문

- 년 단위로 개신되며 2020년도는 기본 180일에 60일이 추가 되었음.  
→ 2020. 5. 1 이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5.1부터 실시한 업체는  
연장된 기간(240일) 모두 혜택.(휴업 또는 휴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회계연도로 마감이 됨으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 
자동 소진되며 다음 회계연도에도 다시 180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단위로  
기산됨
- 휴직기간은 월단위로, 휴업기간은 날짜별, 시간별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음.  
→ 휴업기간은 회사의 사정(일정)에 따라 특정일에 한정할 수 있음으로 지원기간이  
길어 질 수 있으나, 지원금은 똑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90%  
(2021.3.31限)를 지원받음.(지원기간은 휴업, 휴직 같이 기산됨)
- 고용유지조치가 끝났음에도(예:10.31)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한 달 이상  
(예:12월 이후) 시간을 두어 권고사직 등 조치할 수 있음(실업급여 수급 가능)
- 회사별로 휴업, 휴직 등 상이하게 조치하고 있음으로 자세한 상담은 고용보험  
(1350)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내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